

## 山林法 施行規則 改正 山地利用規制緩和

경관보존과 주요시설 보존을 위하여 산지이용 허가를 많이 제한하여 왔던것을 농어민의 편의제공과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지의 이용개발을 쉽게 할수 있도록 허가제한 사항을 대폭완화하고 신고로써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.

산림청은 이와관련한 규정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'89.8. 1부터 시행키로 하였는데 주요개정골자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. -편집자-

内 容	現 行	改 善
山林毀損許可 制限緩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軍事施設과 國家 또는 公共機關, 教育機關, 醫療機關 施設境界로부터 500m以内</li> <li>○文化財保護區域, 都市公園, 公園保護區域 寺院境內地</li> <li>○鐵道, 軌道, 道路, 運河, 河川, 湖水, 沼池, 祭壇 또는 家屋으로부터 100m以内</li> <li>○國道, 高速道路 및 鐵道沿邊 可視地域의 境遇 2km以内</li> <li>○墳墓에 있어서는 墓地으로부터 500 以内 (但, 緣故者の 同意를 받는 境遇에는 除外)</li> <li>○名勝古蹟地, 觀光地 및 休養地等 景觀 및 國土保存區域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制限 廢止)</li> <li>○他法에 依하여 制限하고 있는 地域 (範圍 縮小)</li> <li>○(制限 廢止)</li> <li>○國道, 高速道路, 鐵道沿邊 및 定期航路로부터 可視距離 1킬로미터以内의 山林 중 自然景觀保存을 為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市長·郡守가 告示한 地域 (範圍 縮小)</li> <li>○墓域으로부터 20미터 以内 다만, 緣故者の 同意를 받은 境遇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. (範圍 縮小)</li> <li>○名勝地, 遺跡地, 休養地, 遊園地等 景觀保存上 市長·郡守가 告示한 地域</li> </ul>
申告에 依한 山林毀損擴大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送·配電施設, 通信線路 埋設 및 電柱設置 地下資源開發을 為한 試錐事業</li> <li>○造林, 伐採를 為한 施設, 林道, 放火線 其他 山林保護施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現行과 같음</li> <li>○造林, 伐採를 為한 施設, 林道, 放火線, 其他 山林管理 및 保護施設의 設置 (條文 整理)</li> </ul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林產物 貯藏 또는 簡易 加工施設</li> <li>○ 木炭生產施設</li> <li>○ 農漁民이 100m<sup>2</sup> (30坪) 以内의 山林을 毀損하여 다음 施設을 하는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農村近代化促進法에 依한 農家住宅 改良事業</li> <li>• 農業機械化促進法에 依한 農業機械 保管施設</li> <li>• 農幕, 家畜施設, 魚類貯藏施設</li> </ul> </li> <li>○ 農漁民이 2,000m<sup>2</sup> (650坪) 以内 農路를 施設하는 경우</li> <li>○ (新設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林產物 簡易加工施設(條文整理)</li> <li>○ 現行과 같음</li> <li>○ 農林漁民이 다음 각目的 1에 該當하는 다음 施設을 하는 경우(面積制限廢止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現行과 같음</li> </ul> </li> <li>• 農林業機械 保管施設(條文整理)</li> <li>• 農幕, 農路, 畜舍 및 農林水產物의 貯藏施設(條文整理)</li> <li>○ (面積制限廢止)</li> <li>○ 山林所有者가 1ha (10,000m<sup>2</sup>) 以内의 區域에서 林木의 伐採 및 林地의 開墾없이 山菜, 藥草, 特用作物, 觀賞樹栽培를 為하여 必要한 境遇</li> </ul>
--	---	--

## 保安林丘 規制 緩和

### 보안림지정구역 저수지에서 2km이내를 1km로 축소 2ha미만의 소구역개벌도 허용

○ 山林廳은 第1種水源涵養保安林의 指定基準을 貯水池로부터 2km 以内로 指定하여 왔으나 林相이 좋았고 地被物이 造成되어 水源涵養 機能이 向上되는 等 林地與件 變化를勘案하여 이번에 山林法施行規則을 改正하여 貯水池로부터 1km 以内로 縮小하므로서 山主의 不利益을 줄이고 經營意慾을 고취시키도록 하였다.

○ 한편 水源涵養保安林에서는 皆伐을 하지 못하도록 되여 있으나 伐期令에 달하고 土砂流出 및 貯水機能에 支障이 없는範圍內에서 1團地 伐區面積 2헥타 以內의 小區域皆伐을 許容키로 하였다.

○ 또한, 過去에는 許可를 받아야 할 수 있던 稚樹가꾸기, 가지치기, 뎅굴除去 等 育林을 위한 施業은 山主의 任意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○ 間伐施業에서는 落石 및 火災防備保安林을 除外하고는 弱度間伐 以下만 許容하던 것을 強度間伐까지 許容하고

○ 擇伐施業에서는 山林의 形態나 種類에 따라서 伐採方法, 伐採對象木, 伐採量等에 制限을 두고 있던 것을 一般山林과 같이 하도록 하는 等 保安林內 施業規制를大幅 緩和하였다.